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1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민선5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권고사항을 반영함.

##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시장의 소속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 산업지원사업소 · 지식정보사업소 · U-정보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하부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둠(안 제2조).
- 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과 · 소장의 사무분장 및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라. 부시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과 감사관을 둠(안 제5조).
- 마. 본청에 행정국 · 기획경제국 · 주민생활국 · 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두고, 행정국에 총무과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문화관광과 및 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 세정과 · 기업유치과 · 경제정책과 · 녹색성장과 및 생명산업과,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 · 사회복지과 · 가족여성과 · 일자리정책과 ·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도시디자인과 · 건축과 · 건설과 및 재난안전과,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 청소행정과 · 푸른녹지과 · 시민공원과 · 교통정책과 및 녹색교통과를 두며, 각 국별 행정사무를 분장함(안 제6조부터 제11조).
- 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조직과 기관장의 사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

- 사. 시장의 하부행정기관인 구와 동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구청장과 동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
- 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단체 등과의 연계성 및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명칭 변경과 담당기능을 재조정함.

- 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0. 7. 23. ~ 8. 2.(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지식정보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하부행정기관 : 상록구, 단원구, 일동, 이동,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제3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과·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시 본 청**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감사관을 둔다.

**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생활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문화관광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민원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관광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기업유치과·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 및 생명산업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 심사분석, 법무 및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및 에너지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출산, 아동 및 보육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 및 재난안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디자인,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건설, 도로, 지리정보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 재난안전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푸른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녹색교통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교통 시책 및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 제16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 개선사업
4. 시설 원예·채소·과수·화훼 및 특용·약물작물재배 기술개발 및 지도

##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산업지원사업소·지식정보사업소·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제19조(소장)**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사업소에는 기업민원과, 외국인주민센터, 공단환경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건축민원 등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나. 노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사업소에는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평생학습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
  -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를 둔다.

### 제2절 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업무,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민원즉심관”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③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⑦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⑧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⑨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⑩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⑪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 (12)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하고, 제1조 중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각 조항의 “회관”과 “관장”을 각각 “센터”와 “센터장”으로 한다.
- (13)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산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안산시여성비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1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총무과장 박석운  조직교육담당 전덕주  황병노 (행정 3108)

[별표 1]

##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지식정보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312(이동)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재지
상록구	상록구청
	일동 주민센터
	이동 주민센터
	사1동 주민센터
	사2동 주민센터
	사3동 주민센터
	본오1동 주민센터
	본오2동 주민센터
	본오3동 주민센터
	부곡동 주민센터
	월피동 주민센터
	성포동 주민센터
	반월동 주민센터
단원구	안산동 주민센터
	단원구청
	와동 주민센터
	고잔1동 주민센터
	고잔2동 주민센터
	호수동 주민센터
	원곡본동 주민센터
	원곡1동 주민센터
	원곡2동 주민센터
	초지동 주민센터
	선부1동 주민센터
	선부2동 주민센터
	선부3동 주민센터
	대부동 주민센터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77
----------	------

제안년월일 : 2010. 9. 2.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외국인주민센터는 산업지원사업소와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조정함.

## □ 주요골자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추가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음.(안 제2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푸른녹지과를 녹지과로 변경함.(안 제11조)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식정보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푸른녹지과”를 “녹지과”로 한다.

제18조 중 “지식정보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외국인주민센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호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 및 사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부칙 중 제2조 제1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지식정보사업소”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추가하고,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43(원곡동)” 다음에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을 추가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u>지식정보사업소</u>,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p> <p>3. (생략)</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p> <p>-----</p> <p>-----</p> <p>1. (원안과 같음)</p> <p>2. -----</p> <p>--- <u>지식정보사업소</u>, 외국인주민센터, -----</p> <p>-----</p> <p>3. (원안과 같음)</p>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푸른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녹색교통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p> <p>----- 녹지과·</p> <p>-----</p> <p>② (원안과 같음)</p> <p>1. ~ 6. (원안과 같음)</p>
<p>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산업지원사업소·<u>지식정보사업소</u>·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둔다.</p>	<p>제18조(설치) -----</p> <p>-----</p> <p>----- <u>지식정보</u></p> <p>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p> <p>-----</p>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산업지원사업소에는 기업민원과, <u>외국인주민센터</u>, 공단환경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p> <p>-----</p> <p>-----</p> <p>1. (원안과 같음)</p> <p>2. ----- &lt;삭제&gt;</p>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가. ~ 다. (생략) 라.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생략) 사. (생략) 3. (생략) <u>&lt;신설&gt;</u>	가. ~ 다. (원안과 같음) <u>&lt;삭제&gt;</u> <u>&lt;삭제&gt;</u> 라. (원안 바와 같음) 마. (원안 사와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 가.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5. ~ 7. (원안 4. ~ 6.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원안과 같음) <u>&lt;삭제&gt;</u>

## 신·구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관련)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관련)	
기관명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사동)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사동)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사동)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사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고잔동)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봉산로 57(원시동)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봉산로 57(원시동)
지식정보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지식정보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신설>	<신설>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사동)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